

NC-530 K

신청인(각 신청인의 이름):	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.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. f. ☐ 기한 내에 변경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.
- g. ☐ 신청된 변경 사항에 대한 이의는 다음 사람이 제기하였습니다. (이름 및 미성년자와의 관계 기재):
- h. ☐ (부모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) 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제기한 이의를 검토한 후, 신청된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.
- ☐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므로, 신청이 인용되어야 합니다.
- ☐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, 신청이 기각되어야 합니다.
- i. ☐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진술이 사실이며 충분하고, 신청된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(및 요청이 있는 경우 이름 변경)이 사기 목적이 아니므로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.
- j. ☐ 기타 결정(있는 경우):

법원의 명령 내용

4. ☐ 항목 3b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- a. ☐ 여성.
- b. ☐ 남성.
- c. ☐ 논바이너리.

법원의 추가 명령

5. ☐ 다음 사람의 이름을(은)(신청 제기 당시의 법적 성명 기재):
- a. ☐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(변경 후 법적 성명):
- b. ☐ 이전에 법원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.
6. ☐ 항목 4에 기재된 성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증명서가 정정발급되어야 합니다.
- ☐ 항목 5에 기재된 이름 변경 사항도 반영.

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한 경우, 신청인은 본 명령문의 등본을 주 등록관(State Registrar)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주 등록관은 본 명령문의 등본과 해당 수수료를 수령하면, 변경된 미성년자의 성별 및 본 명령에 명시된 성명 변경사항이 반영된 출생증명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.

7. ☐ 기타 명령:

날짜:

사법관